

2003. 3. 28(금)
제88회임사회제4차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총 무 사 회 위 원 회

- 제6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의 규정에 의한 공공 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 제16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로서 동법 제26조”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로 함.
- 일부 불합리한 규정 보완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자동차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규정은 지방세법 제196조의8 제2항의 일할계산 규정에 위배되어 삭제하고
 -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감면이 되도록 하며
 -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던 공장과 법인을 매각하고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공장 등의 지방이전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감면이 되도록 3년간 연장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후준)

가. 법적검토

- 금번 감면조례의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및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관련 법률명을 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 한 것으로

-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규정은 지방세법 제196조의8 제2항에 의하여 일할계산 규정이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조항으로 삭제하였으며,
- 수도권소재 법인,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감면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것은 수도권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되고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법인 및 공장의 지방이전을 유도하는 정책적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 본 조례개정안은 행자부 세제13400-1384(2002.12.4) 및 충북도 세무 13400-3398(2002.12. 9)호에 의거 시군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 표준안과 함께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도록 하였으며, 조례개정의 내용이 표준안 범위 내에 있으며, 2002년12월13일부터 2003년1월30일까지 45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걸쳐 2003년 3월 13일 제천시조례 규칙심의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는등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하겠음.

나. 행정적 검토

- 동 조례은 상위법결과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정사항이라 할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 과밀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전되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를 2005년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하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서 도시 자금의 농촌 수혈이 라는 의미로는 좋게 평가할 수 있지만 자주채원확충이라는 의미에서는 세원의 손실을 보는지?(김진학 위원)

- 농촌에 있는 사람이 도시지역에 가서 이런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면제를 받지 못하므로, 결국 손해를 보고있다는 얘긴데 여기에 따른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 내지 그런 대책이 없는지?(김진학 위원)
- 지방재정손실에 대한 특별교부세에 대한 요청을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시고 건의를 해서 우리 의회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서로상의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해야함.(김진학 위원)

나. 답변요지 (세정과장 이양식)

- 어떤 면에서는 손실을 볼 수도 있음.
- 아직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나 대책은 없음.
-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음.

5. 소수의견

“없 음”

6. 토론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